

증거보전청구서

사 건 20ㅇㅇ고단 ㅇㅇㅇ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피고인 ○ ○

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의 보전을 청구합니다.

다 음

- 1. (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기재)
- 2. (증거보전할 방법 기재)
- 3. (사건의 개요 기재)
- 4. (증명할 사실 기재)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위 청구인 피고인 O O O(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제출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출기간	제1회 공판기일전 (형사소송법 184조1항)
신청권자	·검사 ·피고인, 피의자 또는 변호인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형사소송법 184~185조
기 타	증거보전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, 즉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		

※ (1) 관할법원

1. 압수 :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

2. 수색 또는 검증 :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,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

3. 증인신문 :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

4. 감정: 감정대상의 소재지, 현재지 또는 감정함에 편리한 장소